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0 선고 2021가단1046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,344,381원 및 그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10. 1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주식회사는 2017. 5. 11. 피고와 대출금액 10,000,000원, 변제기 2022. 5. 11.,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7.9%로 정한 대부거래계약(이하 ‘이 사건 대부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1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.

나. D 주식회사는 2019. 12. 16.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, 2020. 1. 13.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피고는 위 차용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0. 10. 12.까지 연체한 이자는 6,344,381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6,344,381원 및 그중 원금 10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10. 1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법정 최고금리가 2018. 2. 8. 연 24%로 인하되었고, 2021년 하반기에는 연 20%로 인하될 예정이며, 다른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함에도 2018. 2. 8. 이전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.9%의 연체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인 2017. 5. 11. 시행 중이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대부업법’이라 한다) 제8조 제1항, 제15조 제1항, 제3항, 구 대부업법 시행령(2017. 8. 29. 대통령령 제28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2항, 제9조 제1항, 제4항에 의하면,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제한 최고 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은 연 27.9%이고, 그 후 위 법령 조항들은 2017. 11. 7. 대통령령 제28420호로 개정(2018. 2. 8. 시행)되어 제한 최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연 24%로 변경되었으나, 위 대통령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,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제한 최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약정한 연 27.9%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재은